

음란·폭력성 전화에 대한 제재장치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

신 각 철 (법제처 법제연구관)

입법예고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의 제정취지와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음란 폭력등의 행위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본다.

– 편집자주 –

머리말

컴퓨터와 전기통신기술 등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 비약적인 기술혁신은 정보사회의 고도화를 가져와 인간생활에 있어 많은 편의 제공해 편리하고 풍요한 삶을 영위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통신기기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역기능으로 사생활의 비밀침해를 비롯하여 통신매체를 악용하여 음란·폭력·협박·사기 등의 행위로 인간에게 불행을 주는

사건도 점차 늘어가고 있다.

최근의 보도(중아일보 94.5. 13)에 의하면 부인이 있는 30대의 이아무개라는 학원 원장이 서울 S여중 3학년 학생 이아무개양에게 음란전화를 건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이와 같이 전화·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한 상대방에게 폭언·협박·희롱 등의 행위 또는 성적수치심이나 성적흥분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필요없는 물품의 선전·안내 및 판매강요행위 등 많은 부작용이 유발

되고 있다.

지난번 정기국회에서는 이와 같이 정보사회에서 발생하는 사생활 비밀침해를 방지하고 통신의 자유보장을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제정한 바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취지

93년 12월 27일 「통신비밀보호법」이 법률 제4,650호로 공포되었고, 이 법률은 공포후 6개

전화협박 방지를 위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알고자 하는 자는 미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당해 역무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하며, 전기통신사업자

는 시설이 부족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동 역무를 제공하도록 함.
(체신부 공고 제1994-67호 참조)

월이 경과한 9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 법률의 제정취지는 「국민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의 감청과 우편물의 검열 등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가 구현되는 자유로운 민주사회로 진전시키고자 제정」시키고자 제정하게 되었다.

즉, 통신의 비밀보장을 통하여 사생활비밀 침해방지와 통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현법(제17조, 18조) 규정에 근거하여 하위법으로서 구체화할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법률은 권력기관에 의한 불법검열, 감청, 기타 통신제한조치에 대하여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통신이용자(수신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13조(전화협박 등의 방지를 위한 제한) 전화에 의한 폭언·협박·희롱 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신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라고 송신인의 전화번호 확인제도를 법률로 명문화하였다.

위의 법률을 근거로 이번에 정부(체신부)에서는 시행령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체신부 공고 제1994-67호, 1994. 4. 30 관보공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전화협박방지를 위한 발신자 전화번호 확인제도를 새로 도입할 것을 밝혔다.

이와 같이 발신자 전화번호 확인제도 도입의 취지는 정보화사회의 진전에 따라 전화폭력이 점차 증가되어 수신자로 하여금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데 크게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

라고 볼 수 있다.

폭력성 전화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이 규정을 근거로 시행령 제16조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현행의 전기통신사업법에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통신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화폭력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화를 이용하여 수신자 개인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소위 폭력성 전화를 예로든다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폭력·폭언 협박전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만한 해악을 전화로 알리거나 간접적으로 이를 감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신자로 하여금 공포심 내지는 불안감을 조성하게 하는 행위이다. 형법상 협박죄(형법 283조)도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음란·외설전화

음란·외설행위란 함은 성적인 도덕감정을 해하는 범죄행위로서, 건전한 성적풍속 내지는 성도덕을 해치며, 성적수치심이나 성적 흥분을 일으키게 전화 등으로 자극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행위도 형법상(제243조) 음란물배포죄에 해당될 수도 있으나 문서·도화 등 물건이 아닌 무형의 언어(전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벌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처벌상에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4.1.5 법률 제4,702호)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에서 「성폭력범죄」의 개념 정의 중 제14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위의 내용에 따라 음란전화는 물론 PC통신 등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상당방에게 음란성 말이나 글, 그림, 기타 영상 등을 전송하는 자는 성폭력범죄로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판매강요 등 전화권유행위

전화를 이용하여 상품·용역 등을 판매·권유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이른바 폰·세일(phone Sale)을 말한다. 물론 정상적인 거래당사자끼리 상품 정보를 알리고 판매를 권유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바 없으나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즉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번호를 탐지한 다음 전화로 판매를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비밀침해 행위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거나 평온한 생활을 해치게 된다.

현행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1991.12.31 제정) 제1조에 「통신판매」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와 같은 통신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일정요건을 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부당한 권유행위, 계약체결의 강요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전화사기, 중상행위 등

상대방을 사기하여 착오에 빠지도록 함으로써 금품 기타 경제적 손실을 보게하는 행위를 들 수 있다. 예컨데, 전화로 허위 음식주문 또는 용역·상품주문으로 인하여 소규모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기 예약으로 피해를 보게되고, 행정기관의 경우는 필요없는 민원서류 발급을 전화로 대량 신청하여 찾아가지도 않고 폐기처분함으로써 행정력, 국가예산낭비 등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물론 형법상 사기죄(제347조)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무령의 언어로, 또는 범행자(발신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은 곤란하다.

기타 무언, 괴성, 광언 등

전화를 송신하는 자가 전혀 대화없이 반복하여 계속 신호를 보내는 경우 또는 괴성과 미친소리 등으로 불쾌감·공포심을 유발케 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전화를 비롯한 통신매체에 의한 폭력행위는 너무도 다양하여 그 방법을 특정할 수 없고,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92.6. 여중생 자살사건, 이 사건은 BDS대화마당에 해당 여학생에게 폭언이 수록되어 있어 충격을 받고 자살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서는 「정보화사회」, 92.7 「PC통신 부작용과 처벌문제」에서 상세한 고찰한 바 있다.).

음란·폭력성 전화가 발생하는 배경

이와 같이 각양 각색의 폭력성 전화가 발생하는 배경은 전화통신 매체의 구조적인 특성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로, 전화를 비롯하여 PC통신 등 대부분의 전송매체

는 발신(송신)자 「우위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화벨, 팩스 신호, PC통신에 수록 등 거의 모든 통신매체가 수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발신자의 일방적 행위(송신 행위)로 작동되고 음성·문화·영상 등이 채록된다. 즉 발신자가 능동적이라면, 수신자는 수동적인 수밖에 없다. 통신을 계속하든가 중단하든가는 발신자의 의사에 달려있다.

둘째로, 전화·PC통신 등 통신매체에서 구조적으로 발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다. 물론 앞으로 발전된 전화의 경우 발신자의 영상(TV화면)이 표출될 것이지만 현재 보급된 전화, PC통신 등은 상대방의 얼굴이나 실명을 확인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발신자의 신원을 은폐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놓고 음란·폭력성 통신이나 전화가 가능하다.

셋째, 발신자와 수신자간에 1:1로서 「은밀성」이 보장되어 있다. 특히 전화의 경우는 발신자의 음성을 수신자 한 사람만이 들을 수 있고, 당사자간의 대화를 별도로 도청 또는 녹취하지 아니하는 한 그 비밀을 영원히 보장된다. 이와 같은 은밀

성으로 인하여 발신자는 자기의 송신내용이 비밀보장 받을 것이라는 기대, 누구도 들을 수 없을 것이라는 구조적 특성을 알기 때문에 마음놓고 폭력성 통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3가지의 구조적 특성을 제거하는 것이 폭력성 통신이 전화를 예방하는 가장 첨경의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조적 특성이 또한 통신의 비밀보장, 통신의 자유확대, 통신매체이용의 활성화 등을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도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이러한 특성을 제거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신문 등 각 언론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발신자 확인제도」의 도입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앞으로 이번에 입법예고한 바와 같이 전화협박 방지를 위한 역무제공의 신청자에 한하여 선별적으로 발신자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통신매체이용의 활성화에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